

# 인터넷상 법률정보제공의 비용-편익 분석\*

박 흰 일\*\*

I. 머리말	IV. 인터넷상 법률정보제공의 비용-편익 분석
II. 법률정보제공의 현황과 문제점	V. 맺음말
III. 법률정보의 효율적 제공을 위한 개선방안	

## I. 머리말

오늘날 정부기관, 기업, 사회단체를 막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주요 활동정보를 올리고 있다. 그 중에서 중요한 것이 관련 법령정보와 법원의 판례, 행정관청의 결정·처분 레이다. 이러한 인터넷 정보는 각종 검색엔진을 통해 또는 그러한 정보를 모아놓은 웹사이트나 블로그, 카페에 게시되어 이들 정보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찾아보게 된다.

그렇다면 인터넷 운영자가 이러한 법률정보를 인터넷상에 올려놓는 이유는 무엇일까? 웹사이트의 구색을 맞추기 위해 하는 것은 아니고 그러한 정보를 필요로 하는 사람과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기업이나 사회단체의 경우에는 주요 사업활동의 근거나 적법성을 보여주기도 하고 법원이나 행정관청은 법의 지배(rule of law) 내지 법치주의를 표방하는 효과가 있다. 예컨대 어느 대기업이 홈페이지 초화면에 사회공헌 활동을 소개하고 그 근거 법령을 적시하였다고 하자. 당해 기업이 법령을 준

\* 본고는 2010.9.9 세계법률정보망(GLIN) 국제회의 발표용으로 국회도서관에 제출한 국문원고 “법률정보를 위한 전자자원의 활용: 디지털 시대의 바람직한 로 라이브러리”(국회도서관보 제47권 10호, 2010.11에 게재)를 비용-편익 분석의 관점에서 개고한 것이다.

\*\*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법학박사.

수하여 사회공헌 활동을 하고 있음을 누구나 알게 되고 기업 이미지를 높이게 될 것이다.

최근 들어 법조계에서 빈번히 거론되는 화제 중의 하나는 “우리나라의 법률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누구나 열람할 수 있게 하자”(free access to legal information of Korea)는 것이다. 예컨대 2010년 7월 1일 한국법제연구원 개원 20주년 기념 학술대회에서는 11월 11일 G20 정상회의 의제와 관련하여 “개도국에 대한 법제정비 지원” 문제를 다루었다.<sup>1)</sup> 8월 30일 열린 대한변호사협회의 변호사대회에서는 각국의 전문가를 초청하여<sup>2)</sup> 법률정보기구(Legal Information Institute: LII) 설치와 관련된 심도있는 논의<sup>3)</sup>를 벌였다. 국회도서관에서도 9월 9일 세계법률정보망(Global Legal Information Network: GLIN) 연차총회의 학술행사에서 “전자적 법률정보의 활용”에 관한 주제를 다루었다.

전세계적으로 초고속 인터넷이 널리 보급되고 누구나 법률정보를 인터넷에서 쉽게 구해 볼 수 있는데 왜 새삼스럽게 법률정보의 자유로운 열람이 문제가 되는가? 인터넷에서 검색되는 법률정보는 정확하고 최신의 것이라 할 수 있는가? 인터넷상에 법률정보를 공개해서 얻는 편익(benefit)과 그에 따른 손실과 비용(cost)은 각각 얼마나 될까?<sup>4)</sup> 이에 대한 한국의 접근방법에 있어서 개선을 요하는 점은 무엇인가?

우리나라에서도 법전이나 판례집이 없어도 누구든지 인터넷이 연결된 곳에서는 신규 법령과 대법원 판례, 헌법재판소의 결정례, 외국과의 조약·협정 체결 내역을 알 수 있다. 다만, 영어로 된 법률정보는 제한된 범위에서 여러 기관의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원하는 자료를 곧바로 찾아보기 어렵다는 말을 듣곤 한다.

본고는 비용-편익 분석의 관점에서 다음 몇 가지 문제를 고찰하고자 한다.

- 1) “G20 and Global Legislation Strategies” 주제 하에 열린 법제연구원 국제컨퍼런스의 제2부에서는 권오승 서울대 교수가 “법제정비 지원사업의 의미와 효과적인 추진방안”에 대하여 주제발표를 하였다.
- 2) 호주 대표로 발제를 한 뉴사우스웨일스 대학교의 그린리프 교수는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에 2009.9.1부터 1년간 해외석학(International Scholar)으로 초빙되었던 프라이버시법 전문가이다.
- 3) 대한변호사협회는 ‘2010년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의 제1 심포지엄에서 사법정보센터(LII) 운영을 통한 외국의 사법정보공개 현황에 관하여 미국·캐나다·호주·독일 대표로부터 듣고, 특히 사법부에 대해 판결문의 전면공개와 함께 사법정보센터 개설에 필요한 제도적·인적·물적 지원을 요구하였다. 대한변협신문, 2010.8.30자 결의문 참조.
- 4) 일례로 아시아 각국의 법률정보를 무료로 제공하는 웹사이트인 Asian LII에서는 오래 전부터 인도네시아의 각급 법원이 내린 판결을 원문 그대로 거의 실시간으로 올리고 있다. 이를 계기로 인도네시아 법조인들은 커다란 부담이 되는 한편으로 “전세계 사람들이 우리 법원의 판결을 주시하고 있다”는 경각심을 갖게 되었다고 한다.

- 여러 기관이 인터넷을 통해 심도 있는 법률정보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왜 법제처, 대법원, 헌법재판소 외에는 일반에 잘 알려져 있지 않은가?
- 외국인들은 강력한 검색엔진을 가지고도 제대로 된 한국의 법률정보를 찾아보기 힘들다고 하는가? 기본적으로 영어로 된 자료가 부족하기 때문인가?
- 한국의 법률정보가 정확한지, 충분한지, 최신의 것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 인터넷을 통해 소개되는 한국의 법제는 외국과의 교역거래, 외국인투자 등을 얼마나 촉진할 수 있는가? 이를 통하여 한국 법률시장의 외연(外延)을 확장할 가능성은 없는가?

## II. 법률정보 제공의 현황과 문제점

### 1. 법원 판례정보의 경우

법률정보는 크게 법령정보와 판례정보, 문헌정보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역사적으로 법령정보는 법전의 형태를 취하여 일반대중도 비교적 쉽게 접근할 수 있었으나, 판례는 전문도서관이나 가야 찾아볼 수 있는 비교적 접근이 제한된 법률정보였다. 비단 판례를 중시하는 不文法국가라 아니더라도 판례정보는 정형화된 데이터 형식과 수집의 용이성, 활용가치, 이용도 측면에서 데이터베이스(DB) 구축이 빠른 편이었다. 이에 따라 미국, 일본 등 외국에서는 판례가 가장 일찍 DB로 구축되었으며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었다.

그런데 한국의 경우 판례의 DB 구축 및 검색에 있어 외국과는 달리 처음부터 사법부가 관장해 왔는데 여기에는 한국만의 독특한 사연이 깃들여 있다.<sup>5)</sup> 대법원에서는 1983년경부터 대법원판례정보 DB 구축에 착수하였지만 그 성과는 미미했다. 그러나 일부 법관들이 개인적으로 PC를 가지고 판례를 축적하고 검색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이용하였으며,<sup>6)</sup> 전체 법관들에게 PC가 보급<sup>7)</sup>된 1990년경부터는 서울 시내

5) 문용호, “법률정보 검색의 동향”, 국회도서관보 1997.7.

6) 1988년경 286 PC 보급이 급증하면서 임준호 판사가 재판업무에 활용하기 위해 dBASE Plus와 Clipper 언어로 개발한 LEX 판례검색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이것은 대법원의 판례 요지와 법원도서관 및 국회도서관의 법률잡지 논문 목록 정보를 수록하고 자연어 검색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각자 PC에 자료를 복사하여 사용하는 오프라인 형태를 취하였다. 그 당시만 하여도 순수한

법원간 네트워크를 통하여 선고일자, 사건명 등 한정된 조건을 가지고 판례를 검색할 수 있었다. 초기에는 판례집과 판결요지집 등 종이 정보에 비하여 그 사용법도 불편하고 속도도 느리며 출력 형태도 조악하였지만 1990년대 중반 법원 도서관 주도로 프로그램을 대폭 개선하고 사법부 LAN을 구축하면서 법관은 물론 일반인들에 의해서도 널리 활용되기 시작했다.<sup>8)</sup> 오히려 상업적으로 제공되던 법령·판례정보보다 내용도 우수하고 사용법도 편리하여 판례 기타 법률문헌의 검색에 있어서는 대법원 사이트 및 판례 DB가 지금까지도 독보적인 지위를 구축하게 된 것이다.<sup>9)</sup>

이처럼 소수 법관들이 개인적으로 만들어 이용하기 시작한 판례검색 프로그램이 법조계는 물론 온 국민의 사랑을 받는 법률정보 DB가 된 이유는 여러 모로 시사적이다.

첫째는 개인적인 니즈와 호기심에서 출발한 판례검색 프로그램이 상업적으로 흐르지 않고, 동료를 도와주고 즐겁게 해주려는 순수한 동기는 그 후의 개발자들에게도 자연스럽게 승계가 되었다.<sup>10)</sup> 법률 논문이나 저술을 DB에 수록할 때에도 법고을(LX) DVD로 답례를 하는 정도이지만 저자에게 초록을 의뢰하는 방법으로 저작권 동의를 받고 학자들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었다.

둘째는 컴퓨터 초보자라고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철저한 사용자 지향의 검색기능 및 프로그램 개선을 들 수 있다. 1996년부터는 정부의 초고속 통신서비스 시범사업으로 선정되면서 대법원 판례정보 DB를 인터넷이 되는 곳이면 어디서나 손쉽게 무

사용자 지향의 검색 프로그램으로서 서울 지역 판사들 및 소수의 변호사들에게 상당한 인기를 끌었다. 위의 자료.

- 7) 1991년경부터 판사들에게 PC가 지급되어 판결문을 워드프로세서 문서로 작성하기 시작했다.
- 8) 후일 법원 도서관장이 된 강봉수 부장판사가 1993년 임준호 판사의 LEX 프로그램을 토대로 프로그램 개발 및 정보검색이 우수한 FoxPro 언어를 사용하여 순전히 사용자 편의 위주의 LX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그 편리성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고 추가자료의 업그레이드 기능이 보장되면서 서울 지역 판사들에게 급속도로 확산된 데 이어 PC통신망을 통해 변호사, 법학교수, 대학원생들에게 널리 보급되었다. 1996년 강봉수 부장판사가 법원 도서관장에 취임하자 법원 도서관이 LX DB 수록정보의 확대, 시스템 개선을 주도함으로써 상업적인 DB도 넘볼 수 없는 방대한 분량의 매우 효율적인 DB로 자리잡게 되었다. 문용호, 앞의 자료. 2002년 강봉수 서울지방법원장(당시 직함)은 그 공로를 인정받아 법률문화상을 수상했다. 연합뉴스 2002.02.23.
- 9) 법원 도서관의 LX DB는 현재 대법원 사이트<<http://www.scourt.go.kr>> 및 DVD를 통해 이용할 수 있다. 법고을 DVD는 대법원 산하 '사법발전재단'을 통해 실비로 구입할 수 있는데 향후 법률 DB 시장이 커지면 민간 기업이 판례 DB의 제작·발행·보급 사업을 수익사업으로 수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10) 이러한 정신은 법원 업무를 전산화하는 과정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다. 예컨대 부동산등기부를 전산화할 때 여러 가지 난관이 많았으나 이 업무를 담당하던 황찬현 판사 등은 방대한 데이터를 이중으로 입력하여 체크하는 등의 창의적인 방법을 써서 오류를 줄이고 사업기간도 대폭 단축할 수 있었다.

료로 검색할 수 있게 되었다.

셋째는 이 작업에 투입된 수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헌신적인 노력이 하나씩 들쭉날쭉 쌓여 소중한 결실을 보게 된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처음에는 사법부의 공식 판례집인 법원공보가 간행된 뒤 판결 파일을 가공하고 판결요지 등 부가정보를 수작업으로 입력하여야 했다. 1998년 외환위기 당시에는 공공근로 사업의 일종으로 투입된 수많은 인력이 어려운 법률용어와 한자를 배워가면서 방대한 법률 데이터를 큰 차질없이 입력하였다.<sup>11)</sup> 나중에는 아예 판례공보의 출판을 전자출판 방식으로 바꿈으로써 판례공보의 편집이 완성된 파일을 그대로 판례 DB에 입력할 수 있게 되었다. 또 법제처의 협조 하에 현행 법령은 물론 구 법령까지 DB를 그대로 넘겨받았으며, 나아가 참조판례, 하급심판례 및 따름판례(판결이 선고된 이후 그 판례를 참조하거나 변경한 판례)를 직접 연결하여 검색할 수 있도록 했다.

끝으로 기술적으로 검색 도중에 현재까지 찾은 자료를 신속하게 열람할 수 있는 FoxPro 기법의 구현, 관련이 있는 법령의 조항, 개념을 서로 연결시켜주는 하이퍼링크 기능, 새로운 추가 자료를 손쉽게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점 등을 들 수 있다.<sup>12)</sup>

현재 LX DB의 콘텐츠의 구성 내용을 보면 국내외 어떤 법률 DB보다 풍부한 자료를 망라하고 있다. 우선 판례정보는 1948년 이후 현재까지 공간된 대법원 주요 판례의 요지와 전문, 1989년 이후의 헌법재판소 판례의 결정요지 및 전문, 1948년 이후의 서울고등법원, 서울지방법원 및 2003년까지 공간된 하급심판결집 게재 판결의 전문 자료를 수록하였다. 다음으로 법령정보는 열린정부 및 한국법제연구원에서 내려받은 대한민국 현행법령 뿐만 아니라 대법원규칙 및 예규, 1995년 이후 개정된 법령들에 대한 법령연혁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문헌정보는 법원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한국·일본·구미의 법률관련 저술 및 논문의 색인정보 외에 법원 내부에서 발간된 사법논집, 대법원판례해설집 중 1990년 이후에 발간된 논문의 전문(full text)과 저자의 협조를 받아 획득한 논문자료의 파일을 올려놓아 누구나 쉽

11) 외환위기 시절 정부는 '정보화 근로사업'의 일환으로 고학력 실업자들을 임시직으로 채용하여 공공정보를 DB화하는 작업을 실시하였다. 자칫하면 소모적인 예산집행에 그칠 뻔하였으나 어려운 법률용어와 한자를 극복하면서 묵묵히 입력작업에 동참해 준 수많은 입력요원의 땀과 눈물 덕분에 성공을 거둘 수 있었다. 강민구(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법률 정보의 마법상자", 매경춘추 2009.06.02.

12) 당초 사용자가 누구나 직접 필요한 자료를 입력 수정하고 생성할 수 있는 개방형 자료관리 시스템을 채용하였으나, 지금은 법원 도서관에서 집중 관리하고 있다. 법률정보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유용한 자료가 있더라도 도서관에 제공하여 DB에 실을 수 있게 된다.

게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검색 방법에 있어서도 다단계의 간단한 메뉴 방식으로 되어 있으며, 판례검색을 통해 검색된 판례 열람 중에서 참조조문과 참조판례 열람, 따름판례 검색, 참조문헌 내용 보기가 가능하다. 선고일자, 사건명, 사건번호, 법조문 및 주제어<sup>13)</sup>를 조건으로 하여 검색할 수 있으며, 1차 검색에서 추출된 결과자료를 토대로 본문 중의 임의 어로도 검색할 수 있게 하였다. 법령검색에서 해당 조문과 관련된 판례까지도 검색할 수 있게 하였으며, 문헌검색에서 관련된 법조문과 판례를 간편하게 열람할 수 있도록 유기적인 검색 체계를 갖추었다. 그 밖에 사용자만의 자료를 따로 저장할 수 있는 부가기능도 들어 있다.<sup>14)</sup>

## 2. 법률정보 DB의 구축 및 확장의 문제점

법률정보의 콘텐츠를 확대하려면 공공영역(public domain)에 속하는 법령정보와 판례정보부터 포함시켜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법령정보와 판례정보는 법치사회의 발전과 함께 그 공공성과 국민적인 수요를 바탕으로 법제처와 총무처(현 행정안전부), 대법원이 협력하여 가장 먼저 DB화되었고 지금도 계속 진화 발전하고 있다. 그 밖에 국회의 회의록이나 속기록 등 입법자료 DB가 구축되어 있다.

문제는 법률문헌정보, 즉 참고할 만한 가치가 있는 법률관련 단행본과 논문들인데 저작권(copyright) 문제가 걸려 있다. 저작권자의 협조를 구할 수 있는 것은 전문(full text)을 수록하였지만 그 밖에는 기사, 색인 등 書誌정보의 수준에 머물러 있다. 국내에서야 기존 도서관에 가서 오프라인 방식으로 찾아볼 수도 있으나, 문제는 해외에서는 한국 법제에 관하여 영어로 쓰여진 신문·잡지 기사나 법률논문을 쉽사리 찾아볼 수 없다는 데 있다.<sup>15)</sup>

한국 법제에 관심이 많은 외국인들은 구글(Google)<sup>16)</sup>과 같은 매우 강력한 검색엔

13) 본문의 내용 중에서 자동으로 추출되어 등록된 10만여 개의 자연어를 말한다.

14) 법원도서관, 법고을DVD 안내문 참조.

15) 우리나라 저작권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법령, 조약, 규칙, 고시, 공고, 판결, 결정 등의 편집물 및 번역물도 저작권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동법 제7조 제4호)고 하여 법령의 번역작업이 활발하지 못하다는 분석을 하기도 한다.

16)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검색 엔진인 네이버<www.naver.com>를 구글<www.google.com>과 비교한다면 전자는 수집기로 모은 정보를 이용자들이 관심있는 콘텐츠로 재생산하는 반면, 후자는 수집기로 모은 정보를 알고리즘으로 재분류하여 의미있는 데이터 집단인 아카이브(archives)를 새로 구축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따라서 구글은 인터넷 상의 자료를 아카이브를 통해 수렴하

진을 가지고도 제대로 된 한국의 법률정보를 얻기 힘들다고 말한다. 근본적으로는 영어로 된 자료가 부족하기 때문이지만, 그나마 있는 자료도 여러 기관의 홈페이지에 산재되어 있어 체계적으로 접근(systematic access)할 수 없다는 것이 중요한 이유이다. 더욱이 이렇게 수집한 한국의 법률정보가 정확한지, 충분한지, 최신의 것인지 확인할 도리가 없는 것도 문제이다.

이 문제를 비용-편익 분석의 관점에서 볼 때 대법원, 법제처 등에서 많은 예산과 노력을 투입하여 개별적으로는 매우 유용한 법률정보 사이트를 구축하였음에도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한국의 법률정보를 원하는 외국인들에게는 단편적인 정보의 제공에 그치고 있다는 의미이다. 한국의 속담처럼 “구슬이 서 말”이어도 제대로 꿰어 놓지 않아 “보배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한 가지 사례를 더 들면 대법원판결 중 중요한 것은 영역(英譯)을 하여 대법원 영문 홈페이지에 올려놓고 있으나 대부분 직역투의 초벌 번역(first draft)에 그쳐 한국 법개념에 익숙하지 못한 외국 법률가들에게는 정확한 의미전달이 어려운 실정이다.

### III. 법률정보의 효율적 제공을 위한 개선방안

#### 1. 영문 자료의 확충 v. 알기 쉬운 ‘큰 그림’ 해설

내국인은 물론 외국인들도 인터넷을 통해 법률정보를 간편하게 검색할 수 있으면 영문으로 된 데이터가 많을수록 좋을 것이다. 그러나 자료를 영역하는 데는 적잖은 시간과 비용을 요하고, 우리가 이미 경험하는 것처럼, 영문 자료가 많아도 여기 저기 산재해 있다면 좀처럼 찾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그러므로 미국의 법률정보 DB인 WestLaw에서는 중요한 DB 디렉토리를 정형화된 탭으로 열거해 놓고 그곳에서 검색할 것을 권하고 있다. 데이터베이스마다 자료가 충실하게 갖춰져 있으므로 필요한 자료를 거의 빠짐없이 찾을 수 있으며, 대부분의 법률정보 DB는 이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이용자가 한국법을 잘 모르거나 DB에 수록된 데이터가 체계적이지 못할

---

로 방대한 웹페이지 링크와 인덱스 파일, 미러링 파일을 통해 검색하고자 하는 데이터를 빠른 시간 안에 보여줄 수 있다.

때에는 방대한 ‘자료의 숲’에서 길을 잃어버리기 십상이다. 부분적으로 빈 곳이 많은 영문으로 된 한국의 법령, 판례, 학술논문, 법률기사를 체계적으로 소개하기 위해서는 이용자들에게 우선 ‘큰 그림(Big Picture)’부터 보여줄 필요가 있다. 이를테면 주요 개념과 원리를 설명해 주고 그에 해당되는 영문 자료가 있으면 그대로 보여주되, 그렇지 않다면 “자료 없음”이라 할 게 아니라 관련된 국문 사이트나 자료를 연결해주는 것이다. 꼭 알고 싶은 사람은 한국어를 번역해서라도 읽어보려 할 것이다. 가능하면 위키피디아 백과사전처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해설해주면 좋을 것이다. 그 연결정보를 통해 첨부되어 있는 자료(예: 영역되어 있는 법령이나 그 해설 기사)가 최신의 것인지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면 한국의 법제에 관심이 많은 외국인들이 열람할 수 있는 영어로 된 법률정보의 콘텐츠는 어떻게 단시일 내에 만들 수 있는가? 이것은 일종의 맞춤형 정보이므로 법령정보나 판례정보처럼 어느 정부기관이 도맡아 처리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방대한 정보의 볼륨에 비추어 유료 서비스를 통해 채산을 맞출 수 있는 사업도 아니므로<sup>17)</sup> 선뜻 어느 민간 기업이 수행하겠다고 나서지도 않을 것이다. 오직 시간이 해결해준다고 믿고서 하나씩하나씩 쌓아 올라가는 수밖에 없다고 본다.

## 2. Web 2.0과 '싱글 윈도우' 방식의 채택

법률정보의 콘텐츠 확충을 위해서는 디지털 시대의 키워드인 ‘Web 2.0’<sup>18)</sup>에 입각하여 위키피디아(Wikipedia)처럼 집단지성(collective intelligence)이 참여하는 포털 사이트가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예컨대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대한민국 헌법)”라는 항목을 올린다고 가정해보자. 우선 이미 영역되어 있는 헌법전을 연결시켜야 할 것이다. 그리고

17) 한국법제연구원에서는 영문으로 번역한 국내 법령을 회원들에 대하여 유료로 제공하였으나, 외부 전문가들을 위촉하여 번역작업을 하는 데 많은 비용이 들었음에도 회비 수입금만으로는 도저히 채산을 맞출 수 없었다. 그럴 바에는 공익목적 추구를 하고 연구원측은 2010년 4월부터 무료제공으로 방침을 바꾸어 서비스하고 있다.

18) Web 2.0은 인터넷상의 정보를 모아 보여주지만 하는 Web 1.0에 비해 누구나 손쉽게 데이터를 생산하고 인터넷에서 공유할 수 있도록 한 사용자 참여 중심의 인터넷 환경을 말한다. 블로그, 위키피디아, 딜리셔스(del.icio.us)에서 볼 수 있듯이 개방, 참여, 공유를 속성으로 한다. 2004년 10월 오라일리 미디어사(O'Reilly Media, Inc.)의 대표인 팀 오라일리(Tim O'Reilly)에 의해 처음 사용된 개념이다.



한국의 헌법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헌법 제정 및 개헌의 역사(history)는 물론 그때그때의 중요한 이슈와 정치·사회적 배경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헌법상의 주요 개념인 기본권, 표현의 자유, 법치주의, 삼권분립에 대해서도 개략적인 설명을 하여야 할 것이다. 여기에 대법원, 헌법재판소의 주요한 판결례는 물론 기왕에 발간된 저술, 특히 주요 논문의 영문초록을 하이퍼 링크(hyper link)로 연결시키면 된다. 저자의 동의가 있는 국문자료를 pdf 파일로 첨부하면 자체적으로 오류에 대한 검증도 되고 상세한 지식과 정보를 필요로 하는 외국인들은 번역을 해서라도 읽어볼 것이다.

이러한 한국의 법률정보 포털 사이트를 관리하는 기관은 마치 마중물을 붓듯이 (pump priming) 이슈 중심으로 항목을 만들어 놓고 관계 전문가들에게 필요 최소한 분량의 콘텐츠 입력을 요청하면 될 것이다.<sup>19)</sup> 그리고 이미 만들어진 법률정보의 전자적 자원을 엮어 놓으면 체계적인 법률정보가 성립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2000년대 들어 주요 정부기관이 또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지원 아래 아시아-아프리카 개도국에 대한 법제정비 지원 사업을 펼쳐왔다.<sup>20)</sup> 오래 전부터 많은 인력과 예산을 투입해 온 일본에 비하면 성과가 더 많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데,<sup>21)</sup> 대부분의 경우 기관 대 기관 방식으로 따로따로 이루어졌다는 한계가 있다. 즉 법무부, 대법원, 헌법재판소, 법제연구원 등에서 외국의 법률가를 초청하여 교육·연수 프로그램을 실시하거나 상호 방문하는 수준에 머물렀다.<sup>22)</sup> 따라서 그 혜택을 받는 사람들은 극소수이고 정작 도움이 필요한 외국 법률가들은 기회를 얻지 못할 뿐더러 교육·연수를 실시한 내용도 타 기관과 공유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Web 2.0 방식으로 구성된 한국의 법률정보에 관한 포털 사이트는 제대로 운영되지만 한다면 그 동안의 법제정비 지원 사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수행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sup>23)</sup>까지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면 지금까지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이나 주요 결정례를 영문으로 번역하고

19) 법원도서관에서는 LX DB에 법률논문을 수록할 때면 각 논문의 필자에게 A4 한 쪽짜리 요약문을 만들어 줄 것을 요청하는데 이러한 “개별적 의뢰(individual request)” 방식을 응용해도 좋을 것이다.

20) 권오승, “아시아법 연구의 필요성과 방향”, 아시아법연구소 창립기념 심포지엄 발표, 2004.6.

21) 권오승, “법제정비 지원사업의 의미와 효과적인 추진방안”, 한국법제연구원 G20과 글로벌 법제전략 국제컨퍼런스 발표, 2010.7.1.

22) 심동섭, 세계화와 법의 교류, 도서출판 해든, 2006, 231~249면.

23) 권오승·김유환·에릭 엔로우·구대환, 「체제전환국 법제정비 지원」,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6, 24면.

인터넷에 올리는 것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소관으로 여겨졌으나 앞으로는 그럴 필요가 없다. 이것을 통합 포털 사이트에 올려놓고, 주요한 사항이나 이슈에 관한 기사와 논평을 소개하는 한편 전문가들의 저서와 논문의 영문초록을 함께 볼 수 있도록 링크시키기만 하면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현재 기관별로 다기화되어 있는 법률정보망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통합할 필요가 있다. 이미 국회도서관<<http://www.nanet.go.kr>>, 대법원<<http://www.scourt.go.kr>>, 헌법재판소<<http://www.ccourt.go.kr>>, 법제처<<http://www.moleg.go.kr>>, 법무부<<http://www.moj.go.kr>>, 대검찰청<<http://www.sppo.go.kr>>, 한국법제연구원<<http://www.klri.re.kr>>에서는 각기 독자적으로 법령·판례에 관한 DB를 구축하여 인터넷을 통해 일반에 공개하고 있다. 또 국회 법률도서관은 미국 의회도서관이 주도하는 GLIN<sup>24)</sup>에, 법제연구원은 아시아 지역에서의 ALIN(Asia Legal Information Network)<sup>25)</sup>과 호주의 뉴사우스웨일즈 대학교와 시드니 공과대학이 공동운영하는 AustLII, AsianLII (Australasian Legal Information Institute)<sup>26)</sup>에 참가하여 한국의 법령정보를 제공(open access to Korean legal information)하고 있다.

이 문제 역시 요즘 성행하는 ‘싱글 윈도우(Single Window)’ 개념을 적용한다면<sup>27)</sup> 간단히 해결할 수 있으리라고 본다. 對개도국 법제정비 지원 사업을 벌여 온 기관들을 위의 포털 사이트에 모두 참여시키고 그 동안의 실적과 성과물을 수록하게 한다

24) 한국에서 GLIN은 미 의회도서관과 연계하여 국회 법률도서관이 DB검색서비스를 수행한다. 전 세계적으로 법률 DB가 구축되어 있음에도 GLIN 메인화면<<http://www.glin.gov/search.action>>에서는 무슨 자료를 찾아볼 수 있는지 잘 알 수 없게 되어 있다.

25) 법제연구원은 2005년 10월 서울에서 아시아법령정보네트워크(ALIN)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아시아 14개국 22개 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ALIN을 통해 아시아 각국의 법령, 판례, 연구자료를 서로 공유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회원들은 ALIN 웹사이트<<http://www.e-alin.org/>>에서 ALIN 파트너 기관들의 연구보고서, 학술지, 간행물 등을 검색해 볼 수 있다. 손희두, “한국의 법제정비지원 경험과 G20의 역할”, 한국법제연구원 G20과 글로벌 법제전략 국제컨퍼런스 발표, 2010.7.1.

26) 아시아 28개 지역의 221개 법률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는 AsianLII<<http://www.asianlii.org/>>는 호주 및 뉴질랜드의 422개 법률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는 AustLII<<http://www.austlii.edu.au/>>와 함께 호주 뉴사우스웨일즈 대학교(UNSW) 법학부와 시드니 공과대학(UTS)이 학교 지원금 및 일반의 후원금을 받아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다. 법제연구원은 2009년 12월 AsianLII와 MOU를 맺고 상호 법률정보의 교류·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27) 싱글 윈도우란 당초 국제무역을 촉진하기 위하여 무역거래에 수반되는 거래를 모두 온라인화하고 이용자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단일 창구를 통해 One Click으로 해당 기관 및 절차에 접근할 수 있게 구축한 시스템을 말한다. <[http://en.wikipedia.org/wiki/Single\\_Window\\_System](http://en.wikipedia.org/wiki/Single_Window_System)>. 우리나라는 이미 전자정부<<http://www.korea.go.kr>>, 전자민원<<http://www.egov.go.kr>>, 나라장터<<http://www.g2b.go.kr>>, 전자무역 시스템인 uTradeHub<<https://www.utradehub.or.kr>> 같은 싱글 윈도우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바 있다. 그러므로 기술적으로 이를 채택하는 데 아무 문제가 없으며, 이를 시행하려는 각 기관의 단합된 의지가 중요하다.

면 단시간 내에 매우 훌륭한 한국의 법률정보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기 때문이다.<sup>28)</sup>

## IV. 인터넷상 법률정보제공의 비용-편익 분석

### 1. 법률정보 혜택의 균점과 부작용

그동안 법률전문가들의 영역에 속하였던 법률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일반인들에게, 특히 한국의 법제에 관심을 가진 외국인들에게 소개하는 것은 무슨 효과가 있는가?

대한변협은 사법부가 대법원판결을 100% 일반에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하급심 판결도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부분 공개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고, “법원의 내부에서 잠자고 있는 각종 사법정보를 국민의 품으로 돌려 달라”며 대한변협이 주축을 이루는 사법정보센터(LII)의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sup>29)</sup> 그러나 법원의 판결문이 소송당사자 외의 제3자에게 공개될 경우에는 프라이버시 침해, 명예훼손, 업무방해의 우려가 있다.<sup>30)</sup> 뿐만 아니라 인터넷에 수록된 정보가 원본이나 실제와 일치하는지에 대하여도 확인할 길이 없어 만일 데이터가 시간이 지나면서 손상되거나 의도적으로 위·변조된 경우에는 이해관계자들 사이에 다툼이 생길 가능성이 많다. 이로 인하여 거래비용(transaction cost)이 증가한다면 득보다 손해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위험은 원본 데이터를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들여 외국어로 번역하는 경우에는 더욱 가중되게 마련이다. 잘못 번역된 자료를 믿고 한국에 대한 투자나 거래를 하는 당사자에게 인터넷 자료를 올린 사람이나 기관은 어떠한 책임을 지게 되는가?<sup>31)</sup>

28) 학술 분야에서 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사례가 있다.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운영하는 ‘한국역사통합시스템<<http://www.koreanhistory.or.kr/>>’은 여러 기관에서 운영하는 한국사 DB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구축한 관문(Hub)으로서 원하는 정보를 일목요연하고 효율적으로 검색할 수 있게 해 놓았다.

29) 대한변협에서는 교통상해사건의 하급심 판결 같은 경우에도 100% 공개하여야 유사 사건의 소송을 수행하는 변호사들이 법원에 받아들여질 수 있는 청구를 할 수 있고, 승소의 가능성이 커지는 만큼 소송의뢰인들에게도 이익이 된다고 주장한다.

30) 이 때문에 판결문에 나오는 사람, 단체, 회사의 이름을 非實名처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31) 인터넷에 한번 잘못 올려진 정보는 홈페이지든 블로그이든 이를 인용한 사이트가 있었다면 비록 원본이 수정되었다 하더라도 그 오류는 결코 사라지는 법이 없다. 그 결과 인터넷 검색을 하였다

이와 같이 디지털 매체가 오류나 변조에 취약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전자문서의 인증(authentication) 제도가 미국의 일부 州를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다.<sup>32)</sup> 그러나 인증제도를 도입하기 이전이라도 홈페이지 관리자는 당해 웹사이트에 수록된 정보가 최선을 다하여 정확을 기하였지만, 인터넷에 올리거나 번역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개재될 수 있음을 경고(warning)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단지 정보를 제공하는 용도(for information purpose only)”임을 밝히고 그의 진실성·진정성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며 법적 책임이 없음(disclaimer)을 명시하는 경우가 많다.

오늘날 인터넷을 통하여 법률정보가 공개되는 것은 중세 종교개혁 시대에 성경이 보통의 일상언어로 번역되었던 것을 방불케 한다. 비록 오역의 가능성은 있었지만 성경이 성직자의 전유물이 아니라 평신도들도 읽을 수 있게 됨에 따라 신앙의 혁명(Religious Revolution)이 일어났던 것이다. 마찬가지로 법률정보의 공개(free access)는 민주시민의 기본적 권리가 됨으로써 이제는 되돌릴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 되었다. 일부 국가에서는 법률정보의 제공을 상업적인 유료 사이트가 수행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국가가 전자정부(e-Government) 활동의 일환으로 법률정보를 인터넷에 올리고 있다.<sup>33)</sup>

따라서 인터넷 정보의 진실성, 정확성, 최신성을 확보하는 것은 특정인이나 기관에 책임을 묻기보다 Web 2.0 시대에 모든 인터넷 이용자들이 공동으로 노력해야 할 과제라 하겠다.

## 2. 법률시장 외연의 확대와 비용 부담

우리나라의 법률정보가 영어로 번역되어 인터넷에 더 많이 공개되면 될수록 우리나라와 교역을 하거나 투자를 하기 위해 한국의 법제를 미리 알고자 하는 외국인,

니 최신 수정자료보다 수정되지 않은 묵은 자료가 먼저 나타날 수도 있다.

- 32) 미국의 일부 주에서는 온라인 법률정보가 공식적이고 신뢰할 만하다고 인증하는 디지털 서명(digital signature)과 시각확인 印(time stamp)를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주에서는 예산 부족으로 비공식적인 디지털 버전을 공시하고 있어 변호사들은 전자문서의 진정성을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통일주법위원회 전국회의(NCCUSL)는 州정부 전자법률자료의 인증과 보존에 관한 통일법안(draft Authentication and Preservation of State Electronic Legal Materials Act)의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Mary Alice Baish, Discussion Paper on "Digitizing the World's Laws: Evolution and Revolution," 2010 GLIN Conference, pp.154-156.
- 33) 인터넷에 올려진 법률정보의 종류와 내용, 질적 수준은 그 나라의 정치체제, 법의 지배에 대한 인식, 정부개입의 규모와 정도, 가용자금에 따라 나라마다 천차만별이다. Claire M. Germain, "Digitizing the World's Laws: Evolution and Revolution," 2010 GLIN Conference, pp.91-92.

외국기업의 거래비용을 감소시키게 될 것이다. 개도국이나 체제전환국의 경우에는 한국의 경제성장과 민주화의 경험을 본받고 배우기 위해 한국의 법령과 제도를 따라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한국의 앞선 법제가 외국에 전파됨에 따라 한국 법률 시장의 외연이 확장되고 법률전문가의 해외진출이 늘어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KOICA에서는 개도국의 법률제도정비에 대한 공적 원조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를 확대하고 있다.<sup>34)</sup> 만일 앞서 제안한 대로 Wiki 방식을 채용한 한국의 법률정보에 관한 포털 사이트가 그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다면 어느 기관이 그 사업을 주관하고 비용을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 합의 (consensus)가 이루어져야 한다.

오늘날 종합적으로 법률정보를 제공하는 기구(LII)는 많은 나라들이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데 다음 세 가지의 특징이 있다.<sup>35)</sup>

첫째, LII는 법을 만들거나 집행하는 입법·사법·행정기관으로부터 법률정보를 수집하여 이를 가공·편집하는 등 부가가치(value added)를 높이고 일반공중에 제공하는 사업을 수행한다. 즉 법원이나 국회 등 1차적 자료(primary resources)를 생산하는 주요 기관으로부터 법률정보를 받아 부가가치를 높이는 작업을 하는 것이 LII인 것이다.

둘째, LII는 대부분 법률정보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비영리기관이다. 나라에 따라서는 민간단체가 기부금을 받아 수행하기도 하지만 인력이나 자원조달 면에서 한계가 있으므로 이를 감당할 만한 인력과 자원을 갖춘 정부산하의 기관이 담당하는 게 보통이다. 무엇보다도 이 사업에 열의가 있는 실력있는 전문가 집단 또는 집단지성을 갖춘 자원봉사자를 모집하는 일이 사업 성공의 관건이 될 것이다.<sup>36)</sup>

34) KOICA는 2004년 베트남의 정보통신촉진법(IT Law)의 제정과 마약통제 행정역량 강화 사업을 지원한 바 있다. 그동안 KOICA는 개도국 법률가의 교육·연수, 행정제도의 개선작업을 주로 하였으나 앞으로는 법제정비를 지원하는 일에도 좀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KOICA 홈페이지<<http://www.koica.go.kr/>> KOICA사업>사업분야>행정제도 참조.

35) Graham Greenleaf, "Korea and expanding free access to legal information: Experience of the Australasian Legal Information Institute (AustLII)," Korean Bar Association 20th Annual Lawyers Conference, 30 August 2010, Proceeding Paper, p.3.

36) 우리나라에서는 그 동안 온라인 사전을 편찬할 때 집단지성의 힘을 빌리는 개방형 실험은 실패로 끝나곤 하였다. 사람들이 자신의 완벽한 문장에 다른 사람들이 손질(censorship)을 하는 것을 싫어하고 심지어는 영터리로 만든다고 생각하여 참여를 기피하였기 때문이다. 별로 화려하지도 않고 박수갈채와 같은 댓글이 붙지도 않는 완전주의적인 위키위키 플랫폼보다는 금융위기 때 미네르바의 글이 자주 실렸던 아고라 게시판 같은 선정주의적인 플랫폼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우병현, "인터넷시대의 사전편찬 - 새로운 사전편찬의 의미와 과제", 새국어생활 제19권 제4호 (2009년 겨울); 필자도 이러한 견지에서 2010년 9월 말부터 실험적인 블로그<<http://blog>.

셋째, 각국의 LII는 국제적인 유대를 갖고 법률정보의 자유열람 운동(Free Access to Law Movement: FALM)을 공동 전개하고 있으며, 현재 34개국이 FALM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2002년에는 법률정보에의 자유열람을 고취하는 선언문(Declaration on Free Access to Law)을 공표한 바 있다.<sup>37)</sup>

## V. 맺음말

비용-편익 분석의 측면에서 그 동안 우리나라에서 진행되어 온 법률정보의 축적과 검색은 비교적 만족스럽게 이루어졌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 동안 투입한 비용에 비하여 법률정보의 자유로운 열람과 이용에 따른 편익은 민주사회의 건설, 법의 지배로 결실을 보았다. 문제는 우리가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국내 법률정보가 외국의 법률가나 거래상대방들로서는 구해 볼 수 없는 경우가 많다<sup>38)</sup>는 점이다.

각 기관의 법률정보를 통합하여 보여주는 KoreanLII와 같은 공신력있는 웹사이트의 부재로 인한 정보의 비대칭성(asymmetry of information)이 존재한다. 우리나라는 OECD 개발원조위원회(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DAC)의 신규 회원국으로서, 외국인들이 알고 싶어 하는 국내법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충분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제공해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된다. 만일 KoreanLII와 같은 사이트가 마련된다면 여기에 게재되는 법률정보가 정확하고 충분하며 최신의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아울러 그 동안 여러 기관에 분산하여 수행해 오던 개도국에 대한 법제정비 지원 사업도 KoreanLII와 같은 인터넷 포털을 통해 Web 2.0 방식으로 수행하는 것은 시대적 요청이라 할 수 있다.<sup>39)</sup>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이 있다”는 시장원리에 비추어 본다면 지금은 글로벌 시장에서의 한국의 법령제도에 대한 수요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기민하고 융통성 있게 대응하는 전문가들의 노력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

naver.com/koreanlii/>를 운영하고 있다.

37) <<http://www.worldlii.org/worldlii/declaration/>>

38) 대표적인 사례가 우리나라가 체결한 모든 조약, 협정이 연도별로 올려져 있는 외교통상부 사이트<<http://www.mofat.go.kr/state/treatylaw/treatyinformation/index.jsp>>이다. 세계적으로 드물게 국문과 영문으로 전부 수록되어 있음에도 영문 홈페이지에서는 찾아보기 어렵게 되어 있다.

39) 우리나라의 법제정비 지원 사업은 아시아-아프리카의 개도국이나 체제전환국에만 그치지 않고 장차 북한 지역에 근대화된 법령정보를 소개하는 데에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된다. 그러므로 앞으로 필요한 것은 한국이 단기간에 경제성장과 민주화를 달성한 것, 정보통신기술(IT) 강국으로 부상한 것 등 외국인들이 관심을 갖는 사항들이 어떻게 효율적으로 추진되었는지 법제 면에서의 비결을 영문으로 소개하는 작업이라 하겠다.

이를 위해서는 그 동안 각 기관이 법률정보의 확충을 위해 노력해 왔던 것처럼 다음 세 가지 사항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첫째, 풀뿌리 집단지성(grass-roots collective intelligence)의 힘을 빌려야 한다. 여기에 참여하는 개개인의 노력과 열정도 중요하다. 둘째, 공동 관심을 갖는 사람과 단체의 네트워크를 빼놓아서는 안 된다. 한국 속담에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다. 개개인의 노력도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재정지원이 가해져야 업그레이드될 수 있는 것이다. 셋째, 이러한 사업이 장기적으로 지속되려면 위대한 명분과 선순환을 이루는 피드백이 절대 필요하다.

이와 같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는 인터넷을 통해 한국의 법령과 판례, 제도를 국·영문으로 소개함으로써 외국과의 교역거래, 외국인투자를 촉진하고 궁극적으로는 우리 법조인들이 활동할 수 있는 법률시장의 외연(外延)을 확장하게 될 것으로 생각된다. 이것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때 그 동안 받기만 해 온 한국의 법률문화가 베푸는 지위에 올라서고 한국의 법조인들도 세계의 평화와 공동번영에 이바지할 수 있게 될 것이다.

## 참고문헌

- 강민구, “법률 정보의 마법상자”, 매경춘추 2009.6.2.
- 권오승, “법제정비 지원사업의 의미와 효과적인 추진방안”, G20과 글로벌 법제전략 국제컨퍼런스 자료집, 한국법제연구원, 2010.7.1.
- \_\_\_\_\_, “아시아법 연구의 필요성과 방향”, 아시아법연구소 창립기념 심포지엄 자료집, 2004.6.
- 권오승·김유환·에릭 엔로우·구대환, 「체제전환국 법제정비 지원」,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6.
- 문용호, “법률정보 검색의 동향”, 국회도서관보, 1997.7.
- 박현일, “디지털시대의 바람직한 법률도서관”, 국회도서관보 제47권 10호, 2010.11.
- 손희두, “한국의 법제정비지원 경험과 G20의 역할”, G20과 글로벌 법제전략 국제 컨퍼런스 자료집, 한국법제연구원, 2010.7.1.
- 심동섭, 세계화와 법의 교류, 도서출판 해든, 2006.
- 대한변호사협회 공고, 대한변협신문 1면, 2010.8.30.
- Baish, Mary Alice, Discussion Paper on "Digitizing the World's Laws: Evolution and Revolution," 2010 GLIN Conference Proceedings, September 9, 2010.
- Greenleaf, Graham, "Korea and expanding free access to legal information: Experience of the Australasian Legal Information Institute (AustLII)," Korean Bar Association 20th Annual Lawyers Conference, 30 August 2010, Proceeding Paper.
- Germain, Claire M., "Digitizing the World's Laws: Evolution and Revolution," 2010 GLIN Conference Proceedings, September 9, 2010.
- Park, Whon Il, "How to Effectively Utilize E-Resources for Legal Information", 2010 GLIN Conference Proceedings, September 9, 2010.
- 역사편찬위원회 한국역사통합시스템 <<http://www.koreanhistory.or.kr>>
- 세계법률정보망(GLIN) 검색창 <<http://www.glin.gov/search.action>>
- 신문·잡지 기사는 네이버, Google을 통하여 검색하고, 위의 홈페이지는 2011. 2. 1 최종 접속하였음.



## The Cost-Benefit Analysis of Free Access to Law in Korea on the Internet

Park, Whon-II\*

A few years ago, AustLII seemed to me as a mere legal database from Australia open to worldwide users for free. At that time, we, Koreans, were proud of government-operated online databases of Korean laws and court decisions. Later, I recognized that AustLII is more than a mere portal of consolidated legal databases.

At present, the primary legal resources of South Korea are separately operated - as for court rulings, by the Supreme Court; as for laws and decrees, by the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as for treaties, by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respectively. It means each legal database has been made by a number of grass-roots participants. Take an example of court cases. Some judges used their individually-developed search programs while compiling precedents using their own personal computers. In the mid 1990s, when the Court Library had the initiative improving the database and deploying the local area network (LAN) system for the judiciary, the legal database began to be used extensively not only by judges but also by laymen.

Why was the case law search program developed by individual judges? It's because:

First, the pure motives of the developer judges were personal need and curiosity to help or please their colleagues;

Second, the programs had thoroughly user-oriented functions so that novice computer users could use them easily and they were constantly upgraded to

---

\* Associate Professor of Law at Kyung Hee University.

improve such functions; and

Third, unquestionably dedicated efforts of the numerous people contributed to the remarkable achievements of the project. In 1998, following the foreign exchange crisis, many young people who were hired under a government self-help employment program entered an enormous volume of law data without any serious errors as they voluntarily learned hard-to-understand legal terms.

As a result, the current court database includes richer contents and better organized data than any other law database at home or abroad. Then how can we convert the huge legal information contents into the English version that can be accessed by foreigners interested in the Korean legal system? This is a kind of custom-made information and can be achieved neither by any government agency nor private company.

For the extension of legal contents in a short period of time, it is advisable to establish a Wikipedia-like portal site compiled by means of collective intelligence. Likewise, the Korean academic circle on national history has been successful in operating a Korean History portal <<http://www.koreanhistory.or.kr/>>. The non-profit agency that could manage such a Korean legal information portal site needs to provide issue-oriented items just for “pump priming” purpose. Further, systematic legal information databases will be constituted by already available digital legal resources connected with effective hyperlinks.

Since 2000, the Korean government has provided legal technical assistance to help under-developed countries in Asia and Africa with the fiscal and technical support. But so far, Korean efforts has been discretely limited by institutions or agencies, which separately invited foreign lawyers to attend their own education or training programs. Therefore, only a few foreigners were granted benefits while foreign jurists who really needed assistance were not given any opportunities.

The technical problems involved can be simply resolved by applying the “Single Window” concept. All the agencies that have provided legal technical services to under-developed countries have only to upload their achievements

and products onto the united portal site.

To sum up, the following three factors are required for the success of the online legal databases:

First, grass-roots collective intelligence with proper vision and leadership is indispensable;

Second, human networks equipped with necessary financial and technical assistance facilitate the upgrade of legal databases; and

Third, highly motivated "great cause" and reliable and productive feedback are pivotal for the sustainable development of such legal databases.

주제어 : 법률정보, 자유열람, 데이터베이스, 웹 2.0, 법률정보제공기관, 싱글 윈도우  
legal information, free access to law, database, Web 2.0, legal information institute (LII), Single Window